

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반려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43조, 제108조,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의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반려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6. 24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명: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반려 통지서
2. 근거: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, 고용보험법 제43조, 제108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 사유	주소
이*린	94.12.06.	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반려 통지	수급자격인정신청서 내 이직사유 등 요건확인을 위한 보완요청 공문의 등기 반송에 의한 반려 통지	폐문부재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85 (이하 생략)

4. 공고 기간: 2026.06.24. ~ 2026.07.09. (15일간)

5. 기타 사항은 수원고용복지+센터 실업급여과 안지은(☎ 031-231-482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